

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이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5.

발 의 의 원 : 이영애, 강성환
 김원규, 김재우
 김태원, 박갑상
 박우근, 이만규
 임태상, 정천락
 하병문, 황순자
 의원(이상 12명)

1. 제안이유

-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보건·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”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노력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기억학교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기억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바. 기억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사. 승인을 받은 기억학교는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
아. 지정기관에 대해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)

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(이하 “기억학교”라 한다)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) 기억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
3.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
2. 치매극복 컨설팅
4.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
5. 주간보호(시간제, 일시적, 정기적)서비스
6. 치매노인 보호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
7.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(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·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지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기관의 자격은 구·군 직영, 사회복지법인,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.

2. 구·군 이외의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구·군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추천해야 한다.

가.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(지부) 등록이 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억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

나.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고, 해당 구·군 사업 대상 지역에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인

다. 기존 시설과 인접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시설

라.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충실하고,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법인

제6조(설치취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지정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운영법인 및 기관·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정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
2. 지정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정기관이 지도·감독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5. 지정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6.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원된 예산, 각종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조) ① 시장은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

② 기관운영예산은 시 보조금 및 별도 지원예산으로 한다.

제8조(이용료) 시장의 승인을 받은 기억학교는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9조(명칭 사용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되지 아니한 기관은 “기억학교”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단, 동일명칭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지정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억학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42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
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
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을 따른다. <신설 2016. 2. 3.>